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甲과 乙은 A의 집에서 보석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나왔다. 당시 A의 옆집에 살고 있던 B는 우연히 A의 집 안을 들여다보다가 甲이 안방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사법경찰관 P는 위 도난사건과 관련하여 빈집털이 전과자인 甲과 乙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목격자 B에게 甲의 사진 1장만을 보여주었다. B는 사진 속 인물의 머리모양이 자신이 목격한 사람과 동일하였기에 甲을 자신이 목격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P는 B의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였다.

며칠 뒤 乙은 훔친 A의 신용카드를 丙에게 주면서 "노트북을 구입해주면 수고비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丙은 위 신용카드가 도품임을 눈치 채고도 노트북을 구입하다가 도난카드로 밝혀져 체포되었다.

체포된 丙은 P에게 자신이 신용카드를 훔친 것이 아니라 乙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P는 丙을 위 도난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최근의 다수 절도 미제사건까지 조사하겠다. 단, A의 물건을 甲, 乙과 함께 훔쳤다고 자백하면 검사에게 부탁하여 선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고민하던 丙은 甲, 乙과 함께 절취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P는 "만약 말을 바꾸면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경고하였다. 이틀 후 체포된 乙은 P에게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丙은 위 도난사건의 공범이 아니고 자신이 丙에게 신용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P의 조사를 받은 甲은 범행을 부인하였고, P는 그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하였다.

위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 S의 조사과정에서도 甲은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으나, 乙과 丙은 P 앞에서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S는 그 진술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아래 각 문제는 독립된 것임)

1. S가 乙을 기소유예하고, 甲과 丙만 기소한 경우 법원의 조치는? (5점)
2. S가 丙을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였으나 공판심리 중 장물보관죄로 밝혀진 경우
   (1)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7점)
   (2)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8점)
3. S가 丙을 특수절도죄로 기소한 경우, P와 S가 작성한 丙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가? (10점)
4. B는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서명·날인은 자신이 한 것이고 자신이 말한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P가 甲의 사진을 보여주어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말하였다면, B의 진술조서를 甲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5점)
5. S가 甲과 乙을 특수절도죄로 기소한 경우
   (1) P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5점)
   (2) 만약 乙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망하였다면, S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횡령사건의 피고인으로 구속 중인 甲은 乙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 S는 乙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甲이 검찰에 항고하였다. 2015. 6. 22. 甲은 구치소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같은 해 6. 29.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치소 교도관에게 제출하였으나, 그 재정신청서는 같은 해 7. 6. 검사 S 소속의 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甲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고등법원은 甲의 재정신청서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甲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1.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은 적법한가? (10점)
2.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甲이 불복할 수 있는가? (10점)
3.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乙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5점)

〈제2문의 2〉

甲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장 R은 甲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수사기관에 甲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던 법관이다. 항소심에서 甲은 제1심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甲측 증인 A에 대해 다시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甲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에도 甲의 신청에 의해 몇 차례 공판기일이 변경되거나 연기되었지만, 항소심 법원은 수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다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그 후 甲은 A에 대한 증인신청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심 법관들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甲의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다.

1. A에 대한 甲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甲이 기피신청 이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10점)
2. 항소심 법원이 甲의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기각결정을 한 것은 적법한가? (10점)
3. 甲이 재판장 R에 대해 제척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한다면 이러한 상고이유는 타당한가? (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